對 外 秘

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 점검

2015. 8. 27 서울중앙지방법원

▣ 부장판사 업무 관련

● 문제점

- 책임감, 배려심, 존중의 마음 부족으로 인해, 부장판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우월적 지위와 권한만을 내세워 배석판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소임을 게을리 할 우려 존재
- 재판장 기수가 낮은 합의부보다는, 재판장 기수가 높고 경력상향배석판사가 배치된 항소부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 많이 존재
- '배석판사에게의 메모 작성 요구'와 관련하여서는 전임 이○○ 법원장이 2015. 4. 13. 부장판사 전원과의 만찬 자리에서 '자제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'을 하여, 현재 부장판사들이 배석판사에게 메모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상태임

● 항소부 운영 현황

- 항소부에는 모든 재판부에 재판연구원이 1명 배치되어 있는바, 재판연구원에게 일부 사건의 메모를 시키고 있음
- 재판장들이 경력상향배석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은 있으나, 예지희 부장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있고,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장은 없다는 것이 배석판사들의 중론
- 간혹 사건처리 의욕이 지나치거나(○○○ 부장판사) 반대로 경력상향배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부장판사(○○○ 부장판사)가 있다고는 하나, 전반적인 경향은 아닌 것으로 보임(○○○ 부장판사 재판부의 사건처리가 가장 앞서고 있어, 배석판사들이 힘이 들어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임)
- 항소부 부장판사의 기수는 21, 22기여서 아직 고등부장 보임을 완전히 포기할 기

수들은 아님 ⇨ 향후 기수가 높아질 경우 업무에의 의욕 상실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존재

- 제○○○부(재판장: ○○○ 부장판사)의 처리건수가 다른 재판부보다 적은 문제 있음 ⇨ 사건을 꼼꼼히 보는 개인적인 성향, 가정상황(매주 금요일 자녀가 있는 ○○○에 가서 지내다가 옴)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 직간접적인 독려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(2015년 처리건수가 3월 22건, 4월 47건, 5월 43건, 6월 47건이었으나, 7월에는 84건으로 개선됨. 그러나 여전히 최하위권임)

● 합의부 부장의 경우,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고, 배석과의 관계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음

▣ 전담법관의 역할 문제

● 고유 업무인 재판 업무 면에서 통계상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

● 멘토로서의 역할

- 기수, 나이의 차이로,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다른 법관들과 소통하기 힘든 한계가 있음
- 다른 단독판사들의 평은 전체적으로 무난하나 (기수, 나이의 차이로) 식사할 때나 대화할 때 다소 불편한 점은 있다는 것임
- 전담법관에 따라서는 적응 의지가 강하고, 재야에서의 경험, 법조선배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려는 전담법관도 존재(○○○ 판사). 반면 소극적이고 선배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 전담법관도 존재(○○○ 판사)

▣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

●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○○ 판사(30기)를 중심으로 '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'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었으나 좌절

- '특정 사무분담의 선발 개념화로 사법관료화 조장'이라는 문제 제기 ⇨ 단독판사 13인이 사무분담 연구모임 결성하여 회의 개최
- '희망'을 1순위로 하는 내규 개정안을 단독판사회의 안건으로 상정 ⇨ 부결

● 현재 내규 개정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

-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에서 김○○ 판사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추진 움직임(장○, 이○○, 정○○ 판사 등에게 후보로 나서 줄 것을 요청)에도 불구하고, 최선임자인 장○ 판사의 단독 후보 출마로 귀결되어 만장일치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 ⇨ 김○○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함. 예전과 같은 지지세력 부재

-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'임원회의'를 개최하였고, 7월에 메일로 공지 절차를 거쳐 단독판사회의 내 '사무분담 연구모임'을 결성하여 운영 ⇨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며, 현재까지 연구모임 결성 등 메일 공지도 없는 점에 비추어,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임

● 단독판사 동향

- 김○○ 판사(30기, 중액단독):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무분담 내규 개정 추진하가가 좌절.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이후, 박○○ 판사(30기, 폐암 투병 중) 모금활동에 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

- 허○(30기), 신○○(32기) 판사: 2014년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김○○ 판사의 지지세력 형성. 김○○ 판사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올해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

- 이○○ 판사(29기, 신청단독): 서기호 의원 법원 재직 시절 함께 법관인사제도나 신○○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 있으나,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서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도 추천을 거부하는 등 별다른 활동 없음

- 이○○ 판사(31기, 중액단독): 박○○ 판사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단 적 있으나,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. 별다른 활동 없음

- 박○○ 판사(31기, 파산·회생단독): 4. 16.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○○ 후보자 임명 반대 글을 게시. 현재 별다른 활동 없으나, 돌발 행동 배제 못함

▣ 합의·항소 부장과 단독부장,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문제

● 문제점

- 현재 사무분담 관행 유지 시, ① 일정 기수 이하 지법부장은 단독부장 보임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, ② 일정 기수 이하 판사는 배석판사 보임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어 기수 간 불균형 문제 심화

● 합의·항소 부장과 단독부장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

- 지방권, 경인권 법원에 적용되고 있는 순환근무제도의 확대 적용 ⇨ 단독부장 근무기간을 2년 원칙으로 하고, 단독부장 2년 이상 보임자를 합의부장 보임 우선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 및 앞선 기수의 부장판사들을 단독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할 단계임

- 다만,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3년 동안 근무하는 상황 고려 필요 ⇨ 단독부장 2년 근무 후 합의부장 1년만 근무하고 타법원 전보되는 문제점 발생 [대법원 차원에서,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순환근무제도의 수정 적용 검토가 요망됨]

●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

- 기존의 사무분담 결정 기준인 기수, 연령보다 배석기간을 더 우선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[이 역시 대법원 차원에서 검토 필요]

● 내규인 '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' 개정 필요

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	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
	제2장 직급별 사무분담
제4조(사무분담의 확정)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, 법관 개인이나 법원·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	**제4조(합의부의 재판장)** ① 제1심 합의부의 재판장은 <u>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으로 배치하고</u>,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을 경우 변형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긴 법관을 우선하여 합의부장으로 배치하며, 위 기준에 의하여 경합할 경우 연령, 전문성,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합의부장으로 보한다.

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	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
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재판장인 법관 : 2년(다만, 형사 정식재판 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) 2. 재판장이 아닌 법관 : 1년 **제4조의2(단독판사의 보임)**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를 사법연수원 수료기수, 법관경력, 배석판사 근무기간,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. ② 법관 임용 전 법무관·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석·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**제4조의4(합의부 재판장의 보임)**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합의부 재판장을 부장판사 재직 기간과 종전에 부장판사로서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, 사법연수원 수료기수,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.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② 항소부의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,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하여 배치하되, 사법연수원의 특정 기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한다. ③ 합의부의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함을 원칙으로 하되, 법관 개인의 희망과 적성, 전문성 기타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**제5조(단독판사)** ① 단독판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,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하여 배치하되,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단독재판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관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단독판사로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단독판사는 각 업무분야별로 사법연수원의 특정 기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. ③ 단독판사는 2년간 근속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변형부장과 신청, 소액, 정식재판청구사건전담, 약식명령전담,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근속하도록 한다. 다만, 전문재판부에 근무하는 법관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.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·출산한 여성법관에 대하여는 출산휴가를 전후하여 신청단독 등에 따로 배치할 수 있다.

▣ 일반직 사무분담 문제 - ○○○ 전담법관 재판부에 배치된 ○○○ 참여관

- 비단 ○○○ 참여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재판업무에 소홀하는 일반직이 더러 있음

- ○○○ 참여관의 경우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조서작성 등 재판업무의 사실상 태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[○○○ 전담법관의 전임인 현재 ○○지법의 ○○○ 판사는 ○○○ 참여관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함]

- ○○○ 전담법관이 인간적으로 호소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향후의 기대를 속단하기는 이름 [○○○ 전담법관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였다고 표현함]
- 2015. 7. 11.자로 현재는 소액의 ○○○ 전담법관 재판부에 배치되어 있음. 젊은 판사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담법관에게 배치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으로 보았음 [○○○ 전담법관에게는 미리 알려두었음]

▣ 2016년 정기인사 운용방향

- 합의부(항소부 포함) 재판장 및 단독판사 보임 기준이 '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법관'으로 되어 있는 '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의사무분담에관한지침'을 2015년 하반기 판사회의에서 개정할 필요 있음
- 위 내규 개정 이후 항소, 합의부 재판장 및 단독판사 모두 단독부장 및 배석판사로서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보임을 하는 방향으로 운용함이 바람직